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성 북 구
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변 호	21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11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계절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내의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8조)
- 다.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전용시설의 종류) 및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 -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별첨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3. 09. 27. ~ 10. 17.(20일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별첨

3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의견 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.
2. “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(이하 “놀이기구”이라 한다)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마련된 실내의 놀이터를 말한다.
3. “사용료”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운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
2.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
3.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

제4조(이용대상) 놀이기구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린이 및 그 보호자

2.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.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)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

4.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

제6조(이용 및 입장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
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,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행위의 제한)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
2. 고성·난무·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3.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8조(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)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.

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
2. 놀이시설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
② 제1항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법인·단체 또

는 개인이 운영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수탁기관은 관리주체로서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수탁기관은 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.

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제9조에 따라 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성북구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사용료 기준

(제5조제1항 관련)

시 설	대상	사용료	비 고
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	어린이	2,000원	· 1명당 1회 이용금액 · 1회 이용시간 : 2시간 (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) · 돌봄서비스 이용 시 2,000원 추가
	보호자	1,000원	

사용료 감면 기준

(제5조제2항 관련)

구분	감면대상	비고
전액 감면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 등)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	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	
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	
	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	
	제4조제2호에 따른 인솔자	
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	
30% 감면	성북구 소재 어린이집, 유치원(학원)에서 시설 사용 시	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: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
- 비용추계의 전제
 - 2026년까지 키즈카페 20개소 설치·운영('24년 8개소, '25년 14개소, '26년 20개소)
 - 2024년 이후 조성예정 시설은 면적 200㎡, 운영인력 3명으로 산출
 - ※ 예산지원 기준(2023년 기준)

조성비용	면적	종사자 (100㎡당 1명)	운영비 (사비100%)	분담율
1㎡당 200만원 (사비100%)	150㎡미만	2명	150만원	〈인건비〉
	150~500㎡	3~5명	170만원	2인까지 : 사비 100%
	500㎡초과	6명이상	190만원	3~6명 : 사비 30%, 구비 70%
				6명초과 : 구비 100%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3)	2차년도 (2024)	3차년도 (2025)	4차년도 (2026)	5차년도 (2027)	합계
구분	세입						
	○ 시비보조금	1,663,900	1,692,855	3,474,127	3,995,391	2,478,286	13,304,559
	소계(a)	1,663,900	1,692,855	3,474,127	3,995,391	2,478,286	13,304,559
구분	세출						
	○ 키즈카페 조성	1,663,900	1,200,000	2,400,000	2,400,000	-	7,663,900
	○ 키즈카페 운영	-	576,782	1,240,757	1,860,112	2,841,119	6,518,770
	소계(b)	1,663,900	1,776,782	3,640,757	4,260,112	2,841,119	14,182,670
□ 총 비용(a-b)		0	-83,926	-166,630	-264,722	-362,833	-878,111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시비	1,663,900	1,692,855	3,474,127	3,995,391	2,478,286	13,304,559
	지방세수입		83,926	166,630	264,722	362,833	878,111
구비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합계		1,663,900	1,776,781	3,640,757	4,260,113	2,841,119	14,182,670

5. 덧붙이는 의견 : 서울시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 변동 가능

6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장 강영숙

Ⅱ . 사 용 료 수 입 (참 고)

1. 사 용 료 예 상 수 입

- 시설당 월 약 120만원~150만원 예상(시설 면적별 차이 발생)
 - 산출근거 : [총 정원*80% × 3회차*27일 × 3,000원 × 50%(감면대상자 비율)]/20개소

2. 활 용 계 획

- 시설 자체수입금으로 별도 회계관리 및 시설 운영비로 활용